

용자 사용 절차

용자신청 전 은행 상담
용자 담보물건 확인

용자신청 및 승인
접수 마감일로부터 7영업일 소요

용자취급은행
신용도 및 담보 평가

대출(자금)신청

60일 이내 최초인출(기간연장 불가)

용자금 집행
용자금사용기간 - 예비승인일로부터 180일
(성장기반자금은 접수월 포함)

중간보고(최초 인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중간점검(현장실태조사 실시)

용자금 사용 완료보고
용자금 사용기간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완료점검
서류검토 및 현장실태조사 실시
(성장기반자금은 현장실태조사 제외)

성과보고(2회)
지원 당해연도(1회) - 2년 후(1회)



① 용자대상

- ◆ 환경산업 : 중소·중견 환경기업
- ◆ 녹색전환 : 중소·중견기업(환경기업 포함)

② 접수기간

- ◆ 오염방지시설자금 : 2차: 2025.4.14 ~ 접수규모 초과시까지
- ※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2026년 용자사업은 '26년 1월 공고예정

③ 신청 유의사항

- ◆ 용자신청서 제출 시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인증 필수
- ◆ 우선순위의 심사순위에 따라 용자규모 2배 이내 '초과승인'

④ 우대 사항

- ◆ 영세기업(업력 2년 이상, 근로자 10인 이하 및 매출액 25억원 이하)
- ◆ 환경부 주요정책사업 참여 기업 (우수환경산업체,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등)
- ◆ ESG 우수 중소기업

⑤ 신청 방법

- ◆ 인터넷접수 : 에코스퀘어(<https://ecosq.or.kr>)

⑥ 대출금리

- ◆ 1~1.41%(2025년 3분기 기준)



환경부는 환경산업육성 및 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온실가스배출저감시설 설치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 용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자취급 금융기관

- ▶ 광주은행, BNK 경남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 ▶ NH농협은행, iM뱅크, BNK 부산은행, KDB산업은행
- ▶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 KEB하나은행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 032-540-2215, 2218, 2220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녹색융합클러스터 본부동 3층 기업육성실

환경기업 육성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환경정책자금

미래를 여는
환경솔루션

환경정책자금

환경을 위한 투자
기업을 위한 기회

환경에 투자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장기·저리 용자지원

낮은 금리로 10년간
대출해 드립니다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안내



☑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환경산업, 총 2,000억원) 중소·중견환경산업체 성장 지원

지원대상	지원분야	지원규모	대출기간/지원한도	금리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시설설치자금	1,000억원	3년 거치 7년 상환(10년)/100억원	변동금리 금리1.41%(2025년 3분기 기준)
	성장기반자금	1,000억원	2년 거치 3년 상환(5년)/10억원	

☑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녹색전환, 총 2,600억원) 중소·중견기업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물저감시설 지원

지원대상	지원분야	지원규모	대출기간/지원한도	금리
비영리법인* *중소·중견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비영리법인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 자금	1,200억원	3년 거치 7년 상환(10년)/100억원	변동금리 금리1~1.41%(2025년 3분기 기준)
	오염방지시설자금	1,400억원	3년 거치 7년 상환(10년)/300억원	고정금리 금리1.41%(2025년 3분기 기준)

* 융자금 지원 조건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 정책자금 융자 운용 요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제외 항목

- ◆ 토지 및 부지 매입비
- ◆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및 수입인지·증지비용
- ◆ 수익목적(임대, 매각 등)의 시설
- ◆ 적법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무자료 거래 지원 제외

📌 공동제출서류

제출서류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향후 신용평가 여신심사를 하고, 융자금을 취급할 은행 영업점, 신청자가 선택)
서약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융자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인 기업규모 확인서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우선지원 순위 평가 항목에 따라 기타 해당 서류

시설설치자금 제출 서류

- ◆ 융자요강 제3조 제3호의 환경산업체에 해당함을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제시자료
- ◆ 장치, 시설 시공·제작 업체 사업자등록증(기성품 구매 시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 ◆ 융자신청 시설, 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기성품 구매 시, 사양서, 브로셔, 팸플렛)
- ◆ 시설·장비·건축세부 도면
- ◆ 건축 허가서(건축비 융자 신청시 필수)
- ◆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

성장기반자금 제출 서류

- ◆ 융자요강 제3조 제3호의 환경산업체에 해당함을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제시자료
- ◆ 사업장 운영자금 관련 견적서 및 계약서(해당 업체만 제출)
- ◆ 기타 활동 등에 필요한 자금 관련 내역 서류 * 해당 자금 신청 시 제출

오염방지시설자금 제출 서류

- ◆ 장치, 시설 시공 제작 업체 사업자등록증(기성품 구매 시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 ◆ 융자신청 시설, 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기성 제품 구매 포함)
- ◆ 시설·장비·건축 세부 도면
- ◆ 건축허가서
- ◆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
- ◆ 대기, 수질 등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 ◆ 유해화학물질 영업·취급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증 또는 허가증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제출 서류

- ◆ 온실가스 감축 계획(예상) 산출 내역서
- ◆ 장치, 시설 시공 제작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 ◆ 융자신청 시설, 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기성 제품 구매 포함)
- ◆ 시설·장비·건축 세부 도면
- ◆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
- ◆ 대기, 수질 등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 ◆ 고효율 장치 인증서
- ◆ 계량기, 계측기 설치사진
- ◆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 증빙 자료

📌 용자내용

지원분야	지원범위
시설설치자금	◆ 융자신청서 접수일 이후 70일 이내에 착공 또는 착수하는 공사, 제작, 시설
오염방지시설자금	◆ 2024년 10월 1일 이후 착공(또는 착수)하여 융자신청서 접수일 현재 미완공 *또는 진행중인 장치화 시설 *미완공: 준공, 가동개시, 사용승인 등의 전 단계 또는 제작·공사 진행 중인 장치화 시설물 *용자승인액 200억원이상, 시설설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1일로 적용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 접수일이 속한 월부터 융자금 사용기간 만료일 이내에 사용되는 자금

📌 자금별 문의처

- ◆ 시설설치자금, 오염방지시설자금 : **032-540-2215**
- ◆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 **032-540-2220**
- ◆ 성장기반자금 : **032-540-2218**

